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08. 2. 2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 2. 1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. 2. 19.
- 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. 2.28.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박인기 가정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구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장난감대여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대여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명칭은 “마포토이플라자”라 함.(안 제2조)
- 2) 질 좋고 다양한 장난감의 제공과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보급과 개발, 장난감등에 대한 정보 제공. (안 제4조)
- 3) 대여점 운영은 구청장이 하고,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,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. (안 제5조)
- 4)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해야 함. (안 제6조)
- 5) 대여품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여하고 보호자 없이 이용하는

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음. (안 제8조)

6)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. (안 제9조)

7)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수행하는 자를 선정함에 있어 책임 능력, 공신력, 운영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함. 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동 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(2008.1.17 법률 제8851호)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,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,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장난감대여점의 기능과 운영, 회원가입, 회원의 의무와 이용제한, 장난감 대여 이용료 징수, 장난감대여점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,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,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 위탁의 철회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난감대여점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0 동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난감대여점의 주요 기능은 장난감의 구매·정리·분류·보관·축적,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여, 그 밖에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며, 필요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장난감 놀이는 영유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지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, 신체적·정서적 성장 촉진은 물론 개인의 인성발달에도 큰 영

향을 주기 때문에 장난감대여점 설치·운영시 단순한 대여 기능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장난감 놀이가 보다 체계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운용, 상담 및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.

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질의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아 보다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, 장난감 놀이 및 유아교육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및 급량비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0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, 안 제1조 장난감대여점 설치 목적에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하고, 안 제1조에 규정된 “영유아”와 안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“아동”과 관련하여 “아동”은 「아동복지법」 상 “18세 미만의 자”로, 영유아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“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”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“아동”은 “영유아”로 용어 정리가 필요함.

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8조 본문에서 “각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는 “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는 삭제하고자 함.

안 제10조의 각 호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및 자구정리를 하여 안 제1호 중 “장비, 장비시설”은 “기구, 장비, 시설”로, 안 제2호 중 “책임능력”은 “재정적인 부담능력”으로, 안 제3호 중 “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”은 “전문성 확보 여부 및

사무처리 실적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

안 제11조제2항에서 “위탁협약”은 동 조례안에서 위탁협약과 위탁계약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“위탁계약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, 안 제12조에서는 “사업계획서의 수립”은 “사업계획의 수립”으로, “운영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”는 “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”로 각각 수정하고자 함.

안 제13조 전문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“안 제13조(자원봉사자) ①대여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 ②자원봉사자에게는 대여점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”로 규정하고자 함.

안 제14조 중 “위탁의 철회”는 동 조례안에서 “위탁의 철회”와 “위탁의 취소”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“위탁의 해지”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음.

안 제15조제2항 중 “취소”와 “시정”은 각각 “해지”와 “시정요구”로 하고, 안 제16조제1항 본문 중 “각호의”는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는 “위탁기간”으로, 같은 항 제3호는 “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“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을 신설하고자 함.

안 제17조 제목 “운용규정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하고, “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”를 “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하며, 부칙에서

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입법 체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